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허가사항 의제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36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허가사항 의제(안 제13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10.

다. 회 부 일 : 2026. 4.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허가사항 의제(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허가사항 중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보존법」”이라 함) 제13조의2¹⁾는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리증진사업
2.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²⁾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허가사항을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허가 변경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지원사업계획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주

③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대상·기준, 의견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시행)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민지원사업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